

# 국제교류교육원 운영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 부속 국제교류교육원 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소재지)** 교육원은 본 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 (업무 및 사업)** 교육원은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한국어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. 이를 위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한국어와 외국어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외국어 교육
2. 외국대학과의 교류 업무
3. 외국인을 위한 정규과정(학부, 대학원) 입학 및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
4. 외국어 교육에 관계되는 연구 및 조사
5. 외국어의 교육 이론과 응용방법의 연구
6. 필요한 간행물의 발간
7. 국내외 각종 외국어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
8. 기타 본 교육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직

**제4조 (조직)** ① 교육원은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육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교육원의 행정 및 교육업무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직원과 내·외국인 비전임교원,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 (임원의 자격과 임명 등)** ① 교육원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③ 제4조 제3항의 직원, 내·외국인 비전임교원 및 시간강사의 임용은 총장이 하며, 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## 제3장 재정

**제6조 (재정)** ① 교육원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, 재정은 보조금, 수강료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- ②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보조금, 수강료 및 기타수입금은 본 대학 교비 비등록금 회계수입 경비로 하며, 예산과 결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7조 (회계연도)**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 제4장 운영위원회

**제8조 (운영위원회)** ① 교육원이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, 위원은 교무위원(총장 제외)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교육원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
2. 정규과정(D-2) 외국인 유학생 입학 관련 업무 및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3. 교육원의 규정 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칙의 제·개정
4. 기타 본 교육원에서 필요한 사업

## 제5장 기타

**제9조 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칙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